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국가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31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동혁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11. 20.
3.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예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0호) 및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

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205730호)¹⁾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해당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임(안 제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3호의2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4조(직무) ① -----. 3의2.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2. 검토의견

□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기관으로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때부터 국내외 정보수집 활동과 더불어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국가정보원법」(이하 “국가정보원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646호, 2020. 12. 15.)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폐지되었음.

○ 2020년 개정 전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2948호) 제3조²⁾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이하 “국가안보 관련 범죄”) 및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제16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국가안보 관련 범죄와 국정원 직원의 직무

2)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2948호)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법경찰권) 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와 관련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³⁾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이와 연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 개정 전) 제8조⁴⁾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였음.

□ 따라서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일반 사법경찰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⁵⁾되었는바,

3) 「군사법원법」, 법률제17367호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군사경찰과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 및 제44조제3호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사람: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4) 사법경찰직무법 법률 제17570호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06221호) 개정이유

- 2020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서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삭제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작성·배포 등의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⁶⁾, 부칙 개정⁷⁾을 통해 이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근거를 삭제하였음.
- 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정보활동 업무로만 한정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국가정보원은 기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⁸⁾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일반 사법경찰에 이첩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런데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역량 저하 및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⁹⁾되는바, 국가정보원 직무범위에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포함함으로써

6)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 나. (생략)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 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생략)

7)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7646호**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8) 전부개정 당시 수사권의 원만한 이관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

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제2205730호) 제안이유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제2205730호)(이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소관위원회에 회부(2024.11.21.)되어 있음.

□ 개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다만,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서 개정안과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국가정보원은, 독보적인 대북·해외·과학 정보역량, 외국 정보·수사기
관과의 협조 네트워크 및 수사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 등 북한의 대남공작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율적인 대응
수사진행이 가능하고,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방첩 정보역량과 수사권
을 융합할 경우 빈발하는 군사기밀 유출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
응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
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참고로, 법무부는 동 개정안과 같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의결을 전

제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군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9호)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3.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500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6,000명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3.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자료제공: 법무부 형사기획과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01
2	기획재정부(국세청 ¹⁰⁾)	조세 관련 범죄	5,273
3	법무부(교소도등)	교도소, 구치소 등 내에서 발생한 범죄	1,358
4	국방부(기무사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 등 위반 범죄	312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40
6	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범죄	2,157
7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9
8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9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128
10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사업법 위반 범죄	38
1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방역법 위반 범죄	208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위반 범죄	-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79
14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광산보안법위반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5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법위반 범죄	4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환경 관련 위반 범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00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69
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7
20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60
21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57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41
2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범죄	165
24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503
2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범죄	26
26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8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위반 범죄	36
28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12
2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2
30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28
31	행정안전부	안전분야 관련 범죄	3
32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3
33	국토교통부	교통 등 불법행위 조사, 단속	4
3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범죄	25
35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	5
합 계			14,536

- 10) 기획재정부(국세청) :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조사 공무원’으로서 조세범칙 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혐의자 등에 대해 심문·압수·수색·범칙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특사경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명절차도 법무부 예규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관례적으로 특사경 인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등 관련 범죄	400
2	부산광역시	〃	334
3	인천광역시	〃	371
4	대구광역시	〃	203
5	대전광역시	〃	172
6	광주광역시	〃	166
7	울산광역시	〃	235
8	세종특별자치시	〃	45
9	경기도	〃	730
10	경상남도	〃	404
11	경상북도	〃	595
12	충청남도	〃	583
13	충청북도	〃	528
14	전라남도	〃	465
15	전라북도	〃	273
16	강원특별자치도	〃	531
17	제주특별자치도	〃	33
합 계			6,068